고 성 군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람	기 관 의 장

공 보

제483호 2021. 8. 10.(화)

조 례

고성군 조례 제2664호 고성군 제증명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 2
고성군 조례 제2665호 고성군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 ····· 19
고성군 조례 제2666호 고성군 고령 영세농업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 22
고성군 조례 제2667호 고성군 갱년기 건강관리 및 지원 조례 ····· 24

입 법 예 고

고성군 공고 제2021-1370호 「고성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26
고성군 공고 제2021-1382호 「고성군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31

고 시

고성군 고시 제2021-235호 고성군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면 변경고시 ····· 41
고성군 고시 제2021-236호 고성군 도로명주소 고시 ····· 45
고성군 고시 제2021-236호 연안정비사업 실시계획 승인 고시 ····· 47

회람									

발행: 고성군, 편집: 군정혁신담당관(670-2642, 행정 2642)

고성군의회에서 의결된 고성군 제증명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고 성 군 수 백 두 현 ㊞

2021년 8월 10일.

고성군 조례 제2664호

고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고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수수료의 납부) 수수료는 고성군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별표1”을 “별표 1”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국가유공자”를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독립유공자”를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를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5·18민주유공자”를 “5·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특수임무유공자”를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를 제11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별표5”를 “별표 5”로 한다.

9.「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

10.「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 그 유족 또는 가족.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고성군 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입찰참가신청서, 각종 신고서 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술신청 등과 같이 사전 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 ③ 수입증지요금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전자적 민원처리에 의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현금・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제5조(수수료의 납부) 수수료는 고성군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납부한다.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하는 별표1의 제증명 등에 대해서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1. (생 략)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 별표 1----------. 1. (현행과 같음) 2. ----------

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3. ----------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6.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	6.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5·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7. ----------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신 설>	9.「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신 설>	10.「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제73조의2에 따른 국

	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 그 유족 또는 가족.
9. (생 략)	11. (현행 제9호와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별표 3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 창구에 의한 증명민원의 수수료를 별표5와 같이 감면한다.	④ ---------- 별표 5----------.

■ 고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별표 1] (현 행)

제증명 등 수수료(제3조 관련)

구분	기준	요액	비고
1. 증명			
가.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1) 공장등록 증명	1건	1,000원	
2) 의료기관, 약국(휴, 폐업)사실 증명	1통	300원	
나. 정부, 자치단체의 처분 또는 구역 내의 사실에 관한 증명 및 열람			
1) 지가확인서			
가)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1필지 확인연도에 제한없음	800원	
2) 주택가격 확인서			
가)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 가격 확인서	1주택	800원	
3) 비주거용 부동산가격 확인서			
가)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 확인서	1건	800원	
나)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 확인서	1건	800원	
다. 도시계획 등에 관한 증명			
1)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1필지	1,000원 (컬러발급의 경우에는 1,500원)	
라. 지방세에 관한 증명			
1) 세목별 과세증명	1건	800원 다만, 전자민원(인터넷)발급 시 무료	
마. 회계에 관한 증명			
1) 원천징수공제 증명		무료	
2. 인ㆍ허가, 신고, 신청, 등록, 확인 등			
가. 일반행정관계			
1) 이장재직 사실 확인서		무료	
2) 부동산소유권 사실 확인	1건	300원	

구분	기준	요액	비고
나. 농수산관계			
1) 가축자가사육 확인	1건	300원	
2) 폐선 해체사실 확인	1건	300원	
3) 공동신청사항(대표자의 선정 · 변경 · 지분변경) 신고	1건	1,000원	
4) 어업면허 신청	1건	5,000원	
5)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 허가 신청	1건	4,000원	
6) 이전 인가 신청(어업권,지분)	1건	4,000원	
8) 어업권 분할인가 신청	1건	3,000원	
9) 어업권 변경인가 신청	1건	3,000원	
10) 어업면허증.관리선 사용지정(어선사용승인)증 재발급	1건	1,000원	
11) 관리선 사용지정 및 어선 사용승인 신청	1건	1,000원	
12) 변경사항신고(주소. 개명, 대표자, 선명, 설립목적)	1건	1,500원	
13) 어장시설물의 철거의무 면제(연장) 신청	1건	4,000원	
14) 입어 재결 신청	1건	2,000원	
15) 어업권원부의 열람 및 등본. 초본 교부	1건	800원	
16) 어업권(지분) 이전 등록	1건	1,500원	
17) 근해어업 허가 신청	1건	5,000원	
18) 연안어업 허가 신청	1건	3,000원	
19) 구획어업 허가 신청	1건	5,000원	
20) 어업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	1건	2,000원	
21) 어업허가증(어업신고증명서) 재교부	1건	1,000원	
22) 어업허가 지위승계 신고	1건	4,000원	
23) 어업허가사항 변경 신고	1건	2,000원	

구분	기준	요액	비고
24) 어업개시 신고	1건	1,000원	
25) 어업 신고	1건	2,000원	
26) 어업신고사항 변경 신고	1건	1,500원	
27) 시설물철거의무 면제 신청	1건	4,000원	
28) 포획 · 채취금지 해제허가 신청	1건	3,000원	
29) 내수면어업 면허 신청	1건	5,000원	
30) 내수면어업 허가 신청	1건	4,000원	
31) 내수면어업 면허 연장 허가 신청	1건	5,000원	
32) 낚시어선업 신고	1건	3,000원	
33) 어선원부의 열람 및 등본 · 초본 교부	1건	800원	
34) 어선 건조발주(변경) 허가 신청	1건	2,000원	
35) 어선 개조(개조발주) 허가 사항 변경허가 신청	1건	1,000원	
36) 어선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	1건	2,000원	
37) 어획물 운반업 등록 신청	1건	5,000원	
38) 어획물 운반업 변경등록 신청	1건	2,000원	
39) 육상해수양식업 허가 신청	1건	3,000원	
40) 내수면어업 신고	1건	1,000원	
41) 관리선 사용지정(어선사용승인)사항 변경 신청	1건	1,000원	
42) 어업권포기 신고	1건	1,000원	
43) 비료생산업 등록	1건	30,000원	
44) 비료수입업 신고	1건	20,000원	
45) 어선 건조(건조발주)허가 신청	1건	2,000원	
46) 어선 개조(개조발주)허가 신청	1건	1,000원	

구분	기준	요액	비고
다. 보건사회관계			
1)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	1건	100,000원	
2) 의료기관의 개설장소 이전 허가사항 변경 신고	1건	40,000원	
3) 의료기관의 개설 신고	1건	40,000원	
4) 의료기관의 개설장소 이전 신고사항 변경신고	1건	20,000원	
5) 유기장업 허가(신고)			
가) 종합유원시설업 허가 (조건부영업허가)	1건	60,000원	
나) 종합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변경신고)	1건	30,000원	
다) 일반유원시설업 허가 신청 (조건부영업허가)	1건	50,000원	
라) 일반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 허가신청 (변경 신고)	1건	15,000원	
마) 기타 유원시설업 신고	1건	30,000원	
바) 기타 유원시설업 신고사항 변경 신고	1건	15,000원	
사) 유원시설업 허가조건 이행내역 신고	1건	10,000원	
6) 위생관련 영업 신고			
가) 위생처리업(신규)	1건	3,000원	
나) 위생처리업(변경)	1건	2,000원	
7) 위생용품제조업 허가			
가) 세척제 제조업 신고	1건	10,000원	
나) 세척제 제조업 신고사항 변경 신고	1건	5,000원	
다) 기타 위생용품 제조업 신고	1건	3,000원	
라) 기타 위생용품 제조업 신고사항 변경 신고	1건	2,000원	
8) 안경업소			
가) 안경업소 개설 등록 신청	1건	10,000원	
나) 안경업소 양도 · 양수 신고	1건	5,000원	
9) 치과기공소			
가)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신청	1건	10,000원	
나) 치과기공소 양도 · 양수 신고	1건	5,000원	

구분	기준	요액	비고
바. 문화공보관계			
1) 공연장 등록			
가) 신규 등록	1건	10,000원	
나) 변경 등록	1건	5,000원	
2) 사회단체지부 등록 신청	1건	6,000원	
3) 사회단체지부 등록변경 신고	1건	2,000원	
4) 출판사, 인쇄소 신고 신청	1건	500원	
5) 출판사, 인쇄소 신고사항 변경	1건	300원	
6) 체육시설업의 신고	1건	30,000원	
7) 체육시설업의 변경신고	1건	10,000원	
8)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	1건	10,000원	
9)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변경 신고	1건	5,000원	
10) 노래연습장업등록 신청	1건	20,000원	
11)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 신청	1건	5,000원	
12) 영화상영관 등록 신청, 비디오물시청 제공업등록 신청	1건	20,000원	
13) 영화상영관 변경등록 신청	1건	10,000원	
14)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변경등록 신청	1건	5,000원	
15)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등록	1건	10,000원	
16) 게임제작업,게임배급업 신고사항 변경 등록	1건	5,000원	
17) 일반게임제공업 허가, 청소년게임제공업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 신청,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 신고 신청	1건	20,000원	
18) 일반게임제공업변경 허가, 청소년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변경 등록 신청, 복합유통게임제 공업변경등록. 변경신고신청	1건	5,000원	
19) 영화업 신고	1건	20,000원	
20) 영화업 변경 신고	1건	10,000원	

구분	기준	요액	비고
21) 영화업신고증 재교부	1건	5,000원	
22) 비디오물제작업 및 배급업신고	1건	20,000원	
23) 비디오물제작업 및 배급업 변경 신고	1건	10,000원	
사. 부동산 중개업관계			
1) 부동산중개사업소 개설등록 신청			
가) 법인	1건	30,000원	
나) 개인	1건	20,000원	
2) 중개사무소 등록증 재교부	1건	800원	
3) 분사무소 설치 신고	1건	10,000원	
4) 분사무소 설치 신고필증 재교부	1건	800원	
5)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 수수료	1건	800원	
아. 교통행정관계			
1) 영업용 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 확인 신청	1건	5,000원	
2)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규) 신고	1건	2,000원	
자. 재산관리관계			
1) 공유재산 대부 신청(신규)	1건	5,000원	
2) 공유재산 대부 신청(갱신 또는 기간연장)	1건	3,000원	
차. 환경관계			
1)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변경) 신고	1건	5,000원	
2)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허가 신고	1건	10,000원	
카. 산업자원관계			
1)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항공유판매업·특수판매소) 신고	1건	10,000원	
2) 석유대체연료판매업(석유대체연료 대리점) 등록	1건	30,000원	
3) 석유대체연료판매업(석유대체 연료 주유소) 등록	1건	20,000원	
4) 석유대체연료판매업(석유대체 연료 판매소) 등록	1건	10,000원	

■ 고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별표 1] (개정안)

제증명 등 수수료(제3조 관련)

구분	기준	요액	비고
1. 증명			
가.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1) 공장등록 증명	1건	1,000원	
2) 의료기관, 약국(휴, 폐업)사실 증명	1통	300원	
나. 정부, 자치단체의 처분 또는 구역 내의 사실에 관한 증명 및 열람			
1) 지가확인서			
가)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1필지 확인연도에 제한없음	800원	
2) 주택가격 확인서			
가)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 가격 확인서	1주택	800원	
3) 비주거용 부동산가격 확인서			
가)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 확인서	1건	800원	
나)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 확인서	1건	800원	
다. 도시계획 등에 관한 증명			
1)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1필지	1,000원 (컬러발급의 경우에는 1,500원)	
라. 지방세에 관한 증명			
1) 세목별 과세증명	1건	800원 다만, 전자민원(인터넷)발급 시 무료	
마. 회계에 관한 증명			
1) 원천징수공제 증명		무료	
2. 인 · 허가, 신고, 신청, 등록, 확인 등			
가. 일반행정관계			
1) 이장재직 사실 확인서		무료	
2) 부동산소유권 사실 확인	1건	300원	

구분	기준	요액	비고
나. 농수산관계			
1) 가축자가사육 확인	1건	300원	
2) 폐선 해체사실 확인	1건	300원	
3) 공동신청사항(대표자의 선정 · 변경 · 지분변경) 신고	1건	1,000원	
4) 어업면허 신청	1건	5,000원	
5)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 허가 신청	1건	4,000원	
6) 이전 인가 신청(어업권,지분)	1건	4,000원	
8) 어업권 분할인가 신청	1건	3,000원	
9) 어업권 변경인가 신청	1건	3,000원	
10) 어업면허증.관리선 사용지정(어선사용승인)증 재발급	1건	1,000원	
11) 관리선 사용지정 및 어선 사용승인 신청	1건	1,000원	
12) 변경사항신고(주소. 개명, 대표자, 선명, 설립목적)	1건	1,500원	
13) 어장시설물의 철거의무 면제(연장) 신청	1건	4,000원	
14) 입어 재결 신청	1건	2,000원	
15) 어업권원부의 열람 및 등본. 초본 교부	1건	800원	
16) 어업권(지분) 이전 등록	1건	1,500원	
17) 근해어업 허가 신청	1건	5,000원	
18) 연안어업 허가 신청	1건	3,000원	
19) 구획어업 허가 신청	1건	5,000원	
20) 어업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	1건	2,000원	
21) 어업허가증(어업신고증명서) 재교부	1건	1,000원	
22) 어업허가 지위승계 신고	1건	4,000원	
23) 어업허가사항 변경 신고	1건	2,000원	

구분	기준	요액	비고
24) 어업개시 신고	1건	1,000원	
25) 어업 신고	1건	2,000원	
26) 어업신고사항 변경 신고	1건	1,500원	
27) 시설물철거의무 면제 신청	1건	4,000원	
28) 포획 · 채취금지 해제허가 신청	1건	3,000원	
29) 내수면어업 면허 신청	1건	5,000원	
30) 내수면어업 허가 신청	1건	4,000원	
31) 내수면어업 면허 연장 허가 신청	1건	5,000원	
32) 낚시어선업 신고	1건	3,000원	
33) 어선원부의 열람 및 등본 · 초본 교부	1건	800원	
34) 어선 건조발주(변경) 허가 신청	1건	2,000원	
35) 어선 개조(개조발주) 허가 사항 변경허가 신청	1건	1,000원	
36) 어선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	1건	2,000원	
37) 삭제			
38) 삭제			
39) 삭제			
40) 내수면어업 신고	1건	1,000원	
41) 관리선 사용지정(어선사용승인)사항 변경 신청	1건	1,000원	
42) 어업권포기 신고	1건	1,000원	
43) 비료생산업 등록	1건	30,000원	
44) 비료수입업 신고	1건	20,000원	
45) 어선 건조(건조발주)허가 신청	1건	2,000원	
46) 어선 개조(개조발주)허가 신청	1건	1000원	
47) 양식업 면허 신청	1건	5,000원	
48) 양식업 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신청	1건	4,000원	
49) 양식업권 포기신고	1건	1,000원	
50) 면허사항 변경신고(주소, 개명, 대표자, 선박명, 설립목적)	1건	1,000원	
51) (양식업권, 지분)이전인가 신청	1건	4,000원	
52) 양식업권 분할인가 신청	1건	3,000원	
53) 양식업권 변경인가 신청	1건	3,000원	
54) 관리선 사용의(지정, 승인) 신청	1건	1,000원	
55) 관리선 사용의(지정, 승인)사항 변경 신청	1건	1,000원	

구분	기준	요액	비고
56) 양식업면허증, 양식업허가증, 관리선 사용지정(승인)증 재발급 신청	1건	1,000원	
57) 양식업 허가 신청	1건	3,000원	
58) 양식업 허가 유효기간 연장 신청	1건	3,000원	
59) 양식업 변경 허가 신청	1건	1,000원	
60) 양식업 허가사항 변경 신고	1건	1,000원	
61) 양식업 허가 지위승계 신고	1건	4,000원	
다. 보건사회관계			
1)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	1건	100,000원	
2) 의료기관의 개설장소 이전 허가사항 변경 신고	1건	40,000원	
3) 의료기관의 개설 신고	1건	40,000원	
4) 의료기관의 개설장소 이전 신고사항 변경신고	1건	20,000원	
5) 유기장업 허가(신고)			
가) 종합유원시설업 허가 (조건부영업허가)	1건	60,000원	
나) 종합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변경신고)	1건	30,000원	
다) 일반유원시설업 허가 신청 (조건부영업허가)	1건	50,000원	
라) 일반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 허가신청 (변경 신고)	1건	15,000원	
마) 기타 유원시설업 신고	1건	30,000원	
바) 기타 유원시설업 신고사항 변경 신고	1건	15,000원	
사) 유원시설업 허가조건 이행내역 신고	1건	10,000원	
6) 위생관련 영업 신고			
가) 위생처리업(신규)	1건	3,000원	
나) 위생처리업(변경)	1건	2,000원	
7) 위생용품제조업 허가			
가) 세척제 제조업 신고	1건	10,000원	
나) 세척제 제조업 신고사항 변경 신고	1건	5,000원	
다) 기타 위생용품 제조업 신고	1건	3,000원	
라) 기타 위생용품 제조업 신고사항 변경 신고	1건	2,000원	

구분	기준	요액	비고
8) 안경업소			
가) 안경업소 개설 등록 신청	1건	10,000원	
나) 안경업소 양도 · 양수 신고	1건	5,000원	
9) 치과기공소			
가)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신청	1건	10,000원	
나) 치과기공소 양도 · 양수 신고	1건	5,000원	
바. 문화공보관계			
1) 공연장 등록			
가) 신규 등록	1건	10,000원	
나) 변경 등록	1건	5,000원	
2) 사회단체지부 등록 신청	1건	6,000원	
3) 사회단체지부 등록변경 신고	1건	2,000원	
4) 출판사, 인쇄소 신고 신청	1건	500원	
5) 출판사, 인쇄소 신고사항 변경	1건	300원	
6) 체육시설업의 신고	1건	30,000원	
7) 체육시설업의 변경신고	1건	10,000원	
8)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	1건	10,000원	
9)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변경 신고	1건	5,000원	
10) 노래연습장업등록 신청	1건	20,000원	
11)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 신청	1건	5,000원	
12) 영화상영관 등록 신청, 비디오물시청 제공업등록 신청	1건	20,000원	
13) 영화상영관 변경등록 신청	1건	10,000원	
14)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변경등록 신청	1건	5,000원	
15)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등록	1건	10,000원	
16) 게임제작업,게임배급업 신고사항 변경 등록	1건	5,000원	
17) 일반게임제공업 허가, 청소년게임제공업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 신청,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 신고 신청	1건	20,000원	

구분	기준	요액	비고
18) 일반게임제공업변경 허가,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변경 등록 신청, 복합유통게임제 공업변경등록, 변경신고신청	1건	5,000원	
19) 영화업 신고	1건	20,000원	
20) 영화업 변경 신고	1건	10,000원	
21) 영화업신고증 재교부	1건	5,000원	
22) 비디오물제작업 및 배급업신고	1건	20,000원	
23) 비디오물제작업 및 배급업 변경 신고	1건	10,000원	
사. 부동산 중개업관계			
1) 부동산중개사업소 개설등록 신청			
가) 법인	1건	30,000원	
나) 개인	1건	20,000원	
2) 중개사무소 등록증 재교부	1건	800원	
3) 분사무소 설치 신고	1건	10,000원	
4) 분사무소 설치 신고필증 재교부	1건	800원	
5)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 수수료	1건	800원	
아. 교통행정관계			
1) 영업용 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 확인 신청	1건	5,000원	
2)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규) 신고	1건	2,000원	
자. 재산관리관계			
1) 삭제			
2) 삭제			
차. 환경관계			
1)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 신고	1건	5,000원	
2)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허가 신고	1건	10,000원	
카. 산업자원관계			
1)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항공유판매업·특수판매소) 신고	1건	10,000원	
2) 석유대체연료판매업(석유대체연료 대리점) 등록	1건	30,000원	
3) 석유대체연료판매업(석유대체 연료 주유소) 등록	1건	20,000원	
4) 석유대체연료판매업(석유대체 연료 판매소) 등록	1건	10,000원	

※ 비고: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수수료는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표준금액을 징수한다.

고성군의회에서 의결된 고성군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고 성 군 수 **백 두 현** 인

2021년 8월 10일.

고성군 조례 제2665호

고성군 농어업인수당 지급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농어업인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임업,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을 말한다.
2. “농어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3. “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산촌,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4. “농어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5. “공익적 기능”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9호에 따른 기능을 말한다.
6. “농어업인수당”이란 농어업ㆍ농어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농어업인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과 농어업인의 권리를 보장 증진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농어업인수당의 정책 시행

을 위해 행정적 · 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농어업인의 책무) 농어업인수당을 지급받는 농어업인은 농어업 · 농어촌의 발전 주체로서 공익적 기능의 유지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농어업인수당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성군 농어업인수당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1. 농어업인수당 지급액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문화환경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기획감사담당관, 해양수산과장, 녹지공원과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양성평등 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농어업 관련 기관 · 단체 및 지역사회단체의 대표 또는 임원

2. 농어업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고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 이내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 운영 부서의 업무담당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지급 대상) 농어업인수당 지급 대상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는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인 농어업인 등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지급액 및 지급방법) ① 농어업인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농어업인수당 지급액은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시행시기 및 지급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한다.

③ 농어업인수당은 고성군 관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수단으로 지급한다.

④ 그 밖의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지급신청 등) ① 농어업인수당을 지급받으려 하는 사람은 매년 군수가 정하는 기간 내에 주소지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농어업인수당의 신청방법 및 지급 절차, 지급제외 대상, 지원중지 및 환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농어업인수당 최초 지급시기는 규칙으로 정한다.

고성군의회에서 의결된 고성군 고령 영세농업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고 성 군 수 **백 두 현** 인

2021년 8월 10일.

고성군 조례 제2666호

고성군 고령 영세농업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고성군 고령 영세농업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70세 이상이면서 6,600제곱미터”를 “65세 이상이면서 10,000제곱미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고령 영세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중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만 70세 이상이면서 6,600제곱미터 미만인 농지를 경작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2조(정의) ---------- 65세 이상이면서 10,000제곱미터 ----------.

고성군의회에서 의결된 고성군 갱년기 건강관리 및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고 성 군 수 **백 두 현** 인

2021년 8월 10일.

고성군 조례 제2667호

고성군 갱년기 건강관리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갱년기 건강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갱년기 여성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대상자에게 적용한다.

1. “갱년기”란 여성의 노화 또는 질병에 의해 폐경과 관련된 심리적·신체적 변화(갱년기 증후군)를 겪는 시기를 말한다.
2. “갱년기 건강관리 및 지원 대상자”란 갱년기 증상을 겪고 있는 사람 중에서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갱년기 여성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을 적극 개발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갱년기 건강관리사업의 추진) 군수는 갱년기 건강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갱년기 관련 건강상담 및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2. 갱년기 관련 교육 및 홍보사업
3. 갱년기 관련 교육프로그램 개발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갱년기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 대상자 발굴) 군수는 군민 중 갱년기 건강관리 및 지원 대상자를 발굴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갱년기 건강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의료기관, 관련 단체나 협회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성군 공고 제2021-1370 호

고성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고성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를 재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고성군 조례·규칙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8. 10.

고 성 군 수

1. 재정이유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고성군이 대행하거나 위탁받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
   가. 대행기관이 대행할 수 있는 사무 명시: 안 제3조
   나.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행정적 지원 근거 마련: 안 제4조 ~ 제5조

3. 의견 제출
   - 고성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는 2021년 8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성군수(참조 : 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법인 및 기타 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처: 행정과장 행정담당
      1) 주소: (52943) 경남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 130, 고성군청 행정과
      2) 전화: (055)670-2106 팩스: (055)670-2109

다. 제출 방법 및 문의처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청 행정과장 행정담당〔전화: (055)670-210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고성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고성군조례 제 호

고성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고성군이 대행하거나 위탁받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이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통일자문회의”라 한다) 사무의 일부를 대행할 수 있는 고성군을 말한다.

제3조(운영 · 사무처리 등) ① 대행기관장인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통일자문회의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0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 회의 소집에 관한 사무
2. 법 제29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고성군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
3. 통일자문회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통일자문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4. 그 밖에 군수가 대행기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대행 사무를 수행할 때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 회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영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원을 추천할 수 있다.

제4조(경비의 지원) ① 군수는 영 제30조의2에 따라 협의회 설치 · 운영 및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필요한 경비 지원의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행정적 지원) 군수는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협의회가 수행하는 사업 등의 활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 군수는 협의회에서 회의 및 관련 행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고성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화번호:

○ 의견 내용(찬・반 의견과 그 이유)

제정안	찬반의견		수정안	수정사유
	찬성	반대		

고성군 공고 제2021-1382호

고성군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에 관한 규칙안 제정 입법예고

「고성군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에 관한 규칙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고성군 조례·규칙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8. 10.

고 성 군 수

1. 제정이유

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개정(2019.2.13.시행)으로 대형택시 및 고급형 택시로의 구분 변경은 신고제로 운영하되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구분 변경은 인가제로 운용할 수 있음

나. 구분변경 제한 완화 등을 사유로 고급형(대형)택시에 편중되는 시장질서 교란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구분 변경에 관한 인가 기준을 제정하고자 함

2.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

가. 적용범위: 대형 승용택시, 고급형 택시, 모범형 택시

나. 변경방식: 신고제 ⇒ 인가제(인가조건 충족 시 구분변경 인가)

3. 의견 제출

가. 해당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는 2021년 8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성군수(참조: 도시교통과 교통행정담당)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법인 및 기타 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처: 도시교통과 교통행정담당

1) 주소: (52943) 경남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 130, 고성군청 도시교통과

2) 전화: (055) 670-4684, 팩스: (055) 670-2559

라. 제출 방법 및 문의처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청 도시교통과 교통행정담당〔전화: (055)670-4686〕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조례 개정(안) 1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고성군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에 관한 규칙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화번호:

○ 의견 내용(찬・반 의견과 그 이유)

제정안	찬반의견		수정안	수정사유
	찬성	반대		

고성군 규칙 제 호

고성군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에 관한 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3조 제1항 제6호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3조 제1항 제6호 단서에 따라 고성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형 택시운송사업으로의 구분 변경
2. 모범형 택시운송사업으로의 구분 변경
3. 고급형 택시운송사업으로의 구분 변경

② 제1항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 인가 조건은 별표와 같다.

제3조(세부사항)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3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신고한 구분 변경은 이 규칙에 따라 인가 받은 것으로 본다.

[별표]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 인가 조건(제2조 제2항 관련)

1. 대형 택시운송사업으로의 구분 변경

개인택시 운송사업

가. 대상자: 고성군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나. 인가 요건(신청일 기준)

1)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구분	배기량	차량 충당연한	승차정원
대형 승용택시	2,000cc 이상	1년	6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2) 개인택시 면허 취득 후 1년 경과한 자로서 과거 3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

3) 과거 1년 이내에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을 위반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행정처분(사업 정지, 자격 정지, 과징금 ·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에 따른 휴업 · 폐업 중인 사업자가 아닐 것

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8조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자

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인 · 허가 제한 사유가 없을 것

7) 그 밖의 사업별 면허조건 참조

일반택시(법인) 운송사업

가. 대상자: 고성군 일반(법인)택시 운송사업자

나. 인가 요건(신청일 기준)

1)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구분	배기량	차량 충당연한	승차정원
대형 승용택시	2,000cc 이상	1년	6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2) 과거 3년 이상 사업경력자

3) 과거 3년 이상 무사고 택시운전 경력자

4) 과거 1년 이내에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을 위반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행정처분(사업 정지, 자격 정지, 과징금 ·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운수종사자의 잘못으로 받은 처분은 제외)

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에 따른 휴업 · 폐업 중인 사업자가 아닐 것

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8조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자

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인 · 허가 제한 사유가 없을 것

8) 그 밖의 사업별 면허조건 참조

2. 모범형 택시운송사업으로의 구분 변경

개인택시 운송사업

가. 대상자: 고성군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나. 인가 요건(신청일 기준)

1)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구분	배기량	차량 충당연한	승차정원
모범형 택시	1,900cc 이상	1년	5인승 이하

2) 개인택시 면허 취득 후 1년 경과한 자로서 과거 3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

3) 과거 1년 이내에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을 위반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행정처분(사업 정지, 자격 정지, 과징금 ·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에 따른 휴업 · 폐업 중인 사업자가 아닐 것

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8조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자

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인 · 허가 제한 사유가 없을 것

7) 그 밖의 사업별 면허조건 참조

일반택시 (법인) 운송사업

가. 대상자: 고성군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나. 인가 요건(신청일 기준)

1)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구분	배기량	차량 충당연한	승차정원
모범형 택시	1,900cc 이상	1년	5인승 이하

2) 과거 3년 이상 사업경력자

3) 과거 3년 이상 무사고 택시운전 경력자

4) 과거 1년 이내에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을 위반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행정처분(사업 정지, 자격 정지, 과징금 ·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운수종사자의 잘못으로 받은 처분은 제외)

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에 따른 휴업 · 폐업 중인 사업자가 아닐 것

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8조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자

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인 · 허가 제한 사유가 없을 것

8) 그 밖의 사업별 면허조건 참조

3. 고급형 택시운송사업으로의 구분 변경

개인택시 운송사업

가. 대상자: 고성군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나. 인가 요건(신청일 기준)

1)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구분	배기량	차량 충당연한	승차정원
고급형 택시	2,800cc 이상	1년	10인승 이하

2) 개인택시 면허 취득 후 1년 경과한 자로서 과거 3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

3) 과거 1년 이내에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을 위반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행정처분(사업 정지, 자격 정지, 과징금 ·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에 따른 휴업 · 폐업 중인 사업자가 아닐 것

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8조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자

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인 · 허가 제한 사유가 없을 것

7) 그 밖의 사업별 면허조건 참조

일반택시 (법인) 운송사업

가. 대상자: 고성군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나. 인가 요건(신청일 기준)

1)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구분	배기량	차량 충당연한	승차정원
고급형 택시	2,800cc 이상	1년	10인승 이하

2) 과거 3년 이상 사업경력자

3) 과거 3년 이상 무사고 택시운전 경력자가 운전해야 함

4) 과거 1년 이내에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을 위반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행정처분(사업 정지, 자격 정지, 과징금 ·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운수종사자의 잘못으로 받은 처분은 제외)

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에 따른 휴업 · 폐업 중인 사업자가 아닐 것

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자

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의 인 · 허가 제한 사유가 없을 것

8) 그 밖의 사업별 면허조건 참조

4. 그 밖의 사업별 면허조건	
대 형 택 시	1. 대형 택시 면허는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면허를 받은 자가 직접 운전하여야 합니다. 다만, 면허관청의 허가를 받아 대형 택시를 중형 택시로 전환(변경 인가)한 후에는 양도 가능합니다. 2. 대형 택시는 무선 호출이 가능하여야 하며, 운행기록전산장치(타코미터) 및 영수증발행기 · 카드결제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3. 외관(대형 승용택시): 모범형 택시 준용 4. 요금체계(대형 승용택시): 경상남도 택시운송사업 요금의 모범형 · 대형 택시 요금 준용 5. 사업 개선명령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개선명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6. 본 면허조건 불이행 또는 법규를 위반할 경우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에 하자가 발견될 경우 사업계획변경인가 처분이 취소됩니다. 7. 사업자는 관련 지침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모범형 택 시	1. 모범형 택시 면허는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면허를 받은 자가 직접 운전하여야 합니다. 다만, 면허관청의 허가를 받아 모범형 택시를 중형 택시로 전환(변경 인가)한 후에는 양도 가능합니다. 2. 모범형 택시는 무선호출이 가능하여야 하며, 운행기록전산장치(타코미터) 및 영수증발행기 · 카드결제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3. 외관은 검정색 바탕에 황금색 가로띠 형태(모범형 택시 표기)로 합니다. 4. 요금체계는 경상남도 택시운송사업 요금의 모범형 택시 요금을 준용합니다. 5. 사업 개선명령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개선명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6. 본 면허조건 불이행 또는 법규를 위반할 경우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에 하자가 발견될 경우 사업계획변경인가 처분이 취소됩니다. 7. 사업자는 관련 지침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8. 위 조건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모범택시 운행인가 및 사후관리 요령’ 을 준용합니다.

고급형 택 시	1. 고급형 택시 면허는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면허를 받은 자가 직접 운전하여야 합니다. 다만, 면허관청의 허가를 받아 고급 택시를 중형 택시로 전환(변경 인가)한 후에는 양도 가능합니다. 2. 위치정보에 의한 지정배차 및 배회영업 방지 모니터링 체계 운영이 가능한 택시호출시스템을 설치하고 이러한 기능을 갖춘 호출서비스사업자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3. 고급형 택시는 운행기록전산장치(타코미터) 및 영수증발행기 · 카드결제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4. 완전 예약제로 운영하여야 하며, 택시 승차대 대기금지, 배회 · 상주 영업을 금지합니다. 5. 외관은 외부표시 의무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나, 사전 인가를 득하여 합니다. 6. 카드결제기 및 요금미터기를 대체할 수 있는 모바일 앱(App), 웹(web) 등의 프로그램이 설치된 경우에 한해 카드결제기 및 요금미터기 설치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승객이 영수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해야 함) 7 운행요금은 고성군과 사전 협의 후 자율로 신고하고, 사업계획변경 시 신고한 금액을 적용하며, 모바일 앱(App)으로 구축된 자동(간편)결제, 카드(교통 · 체크 · 신용카드)결제, 현금결제가 모두 가능하여야 합니다. 8. 고급형 택시는 택시부제를 두지 않습니다.(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제9조) 9 사업 개선명령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개선명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9. 본 면허조건 불이행 또는 법규 위반할 경우 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에 하자가 발견될 경우 사업계획변경인가 처분이 취소됩니다. 10. 사업자는 관련 지침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붙임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고성군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에 관한 규칙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고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고성군 택시운송사업 구분 변경에 관한 규칙안」은 재정수반요인이 없으며,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임으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작성자: 도시교통과장 최 대 석

고성군 고시 2021-235호

고성군 가축사육제한구역에 대한 지형도면 변경 고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 및「고성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정에 의거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 및 「토지 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 합니다.

2021. 8. 6.

고 성 군 수

1.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면 변경 작성취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을 고시 하여 토지이용 규제를 투명화함.

2.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면 변경 조서

○ 가축사육제한구역 변경내역 (㎡)

연번	읍면	변경 전			변경 후		
		전체면적	가축사육제한구역		전체면적	가축사육제한구역	
			면적	비율		면적	비율
1	고성읍	44,239,144	43,588,493	98.5%	44,046,732	43,158,315	98.0%
2	삼산면	35,165,572	34,294,390	97.5%	35,208,352	33,105,805	94.0%
3	하일면	30,952,382	29,159,304	94.2%	30,988,719	29,354,044	94.7%
4	하이면	38,110,880	36,817,889	96.6%	38,171,420	37,262,684	97.6%
5	상리면	45,929,335	42,528,767	92.6%	46,010,232	42,797,333	93.0%
6	대가면	52,222,255	50,716,456	97.1%	52,249,294	50,712,025	97.1%
7	영현면	32,109,118	28,809,498	89.7%	32,125,485	29,014,051	90.3%
8	영오면	22,642,014	20,172,010	89.1%	22,648,080	20,105,529	88.8%
9	개천면	40,464,095	39,571,939	97.8%	40,484,235	39,801,575	98.3%
10	구만면	21,604,454	21,141,937	97.9%	21,635,307	21,309,215	98.5%
11	회화면	29,621,279	29,428,427	99.3%	29,613,921	29,518,513	99.7%
12	마암면	33,646,122	33,616,161	99.9%	33,622,916	33,547,648	99.8%
13	동해면	53,791,349	52,147,147	96.9%	53,849,444	52,341,910	97.2%
14	거류면	36,471,337	34,774,453	95.3%	36,526,009	35,002,588	95.8%
계		516,969,334	496,766,871	96.1%	517,180,146	497,031,234	96.1%

○ 가축사육제한구역 세부내역 (㎡)

행정명	행정면적	전부제한구역	일부제한구역(주밀 및 공공시설로부터)				가축사육 제한구역	
			200m 이내	500m 이내	700m 이내	1,000m 이내	면적	비율
고성읍	44,046,732	3,382,770	21,964,715	36,416,198	42,521,236	43,158,315	43,158,315	98.0%
삼산면	35,208,352	7	10,601,049	24,359,256	31,821,256	33,105,805	33,105,805	94.0%
하일면	30,988,719	-	10,375,127	21,327,157	29,021,602	29,354,044	29,354,044	94.7%
하이면	38,171,420	3,098,809	14,073,067	26,662,830	34,180,100	35,443,661	37,262,684	97.6%
상리면	46,010,232	-	10,967,996	28,179,917	40,754,032	42,797,333	42,797,333	93.0%
대가면	52,249,294	-	14,694,028	34,594,346	48,800,094	50,712,025	50,712,025	97.1%
영현면	32,125,485	-	7,017,769	17,853,300	27,048,526	29,014,051	29,014,051	90.3%
영오면	22,648,080	-	6,954,105	14,545,799	19,060,454	20,105,529	20,105,529	88.8%
개천면	40,484,235	-	9,796,604	25,458,134	38,284,940	39,801,575	39,801,575	98.3%
구만면	21,635,307	-	6,201,024	14,835,706	20,347,571	21,309,215	21,309,215	98.5%
회화면	29,613,921	983,635	10,627,917	23,312,180	28,699,549	29,518,513	29,518,513	99.7%
마암면	33,622,916	11,040	12,380,195	27,107,680	32,666,631	33,547,648	33,547,648	99.8%
동해면	53,849,444	1,518,479	17,372,121	36,513,514	50,943,721	52,341,910	52,341,910	97.2%
거류면	36,526,009	-	14,065,139	26,291,276	33,521,116	35,002,588	35,002,588	95.8%
합계	517,180,146	8,994,741	167,090,854	357,457,292	477,670,828	495,212,212	497,031,234	96.1%

3. 가축사육제한구역에 대한 지형도면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 (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

○ 고성군 축산과에 비치 및 한국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RAS) 등재

4. 이해관계인은 고성군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670-43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총 괄 도 (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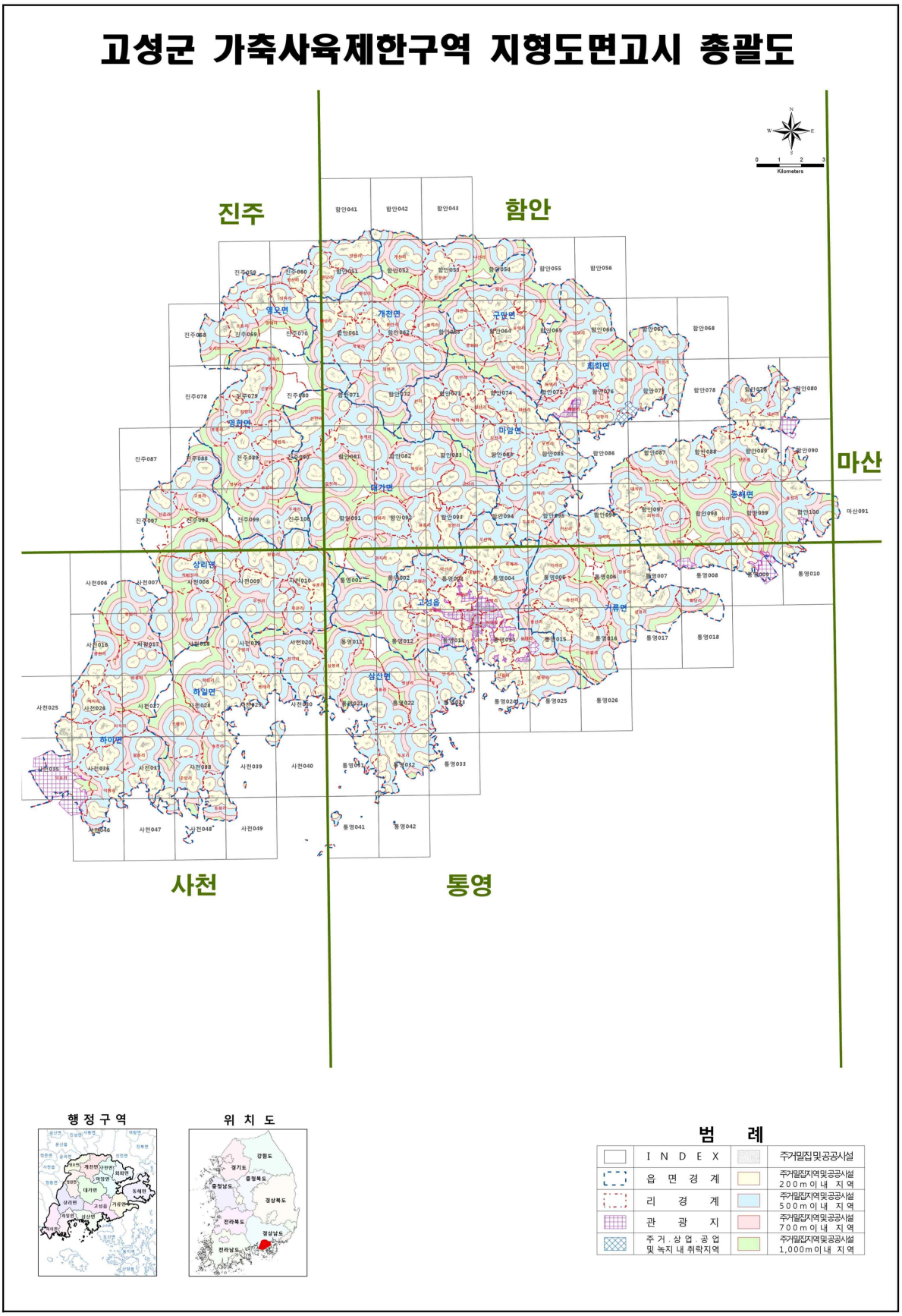
고성군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면고시 총괄도
진주
함안
마산
사천
통영
영오면
개천면
구만면
회화면
영현면
마암면
대가면
동해면
상리면
고성읍
거류면
하일면
삼산면
하이면
행 정 구 역
위 치 도
범 례
I N D E X
읍 면 경 계
리 경 계
관 광 지
주 거 · 상 업 · 공 업 및 녹지 내 취락지역
주거밀집및공공시설
주거밀집지역및공공시설 200m이내 지역
주거밀집지역및공공시설 500m이내 지역
주거밀집지역및공공시설 700m이내 지역
주거밀집지역및공공시설 1,000m이내 지역

6. 총 괄 도(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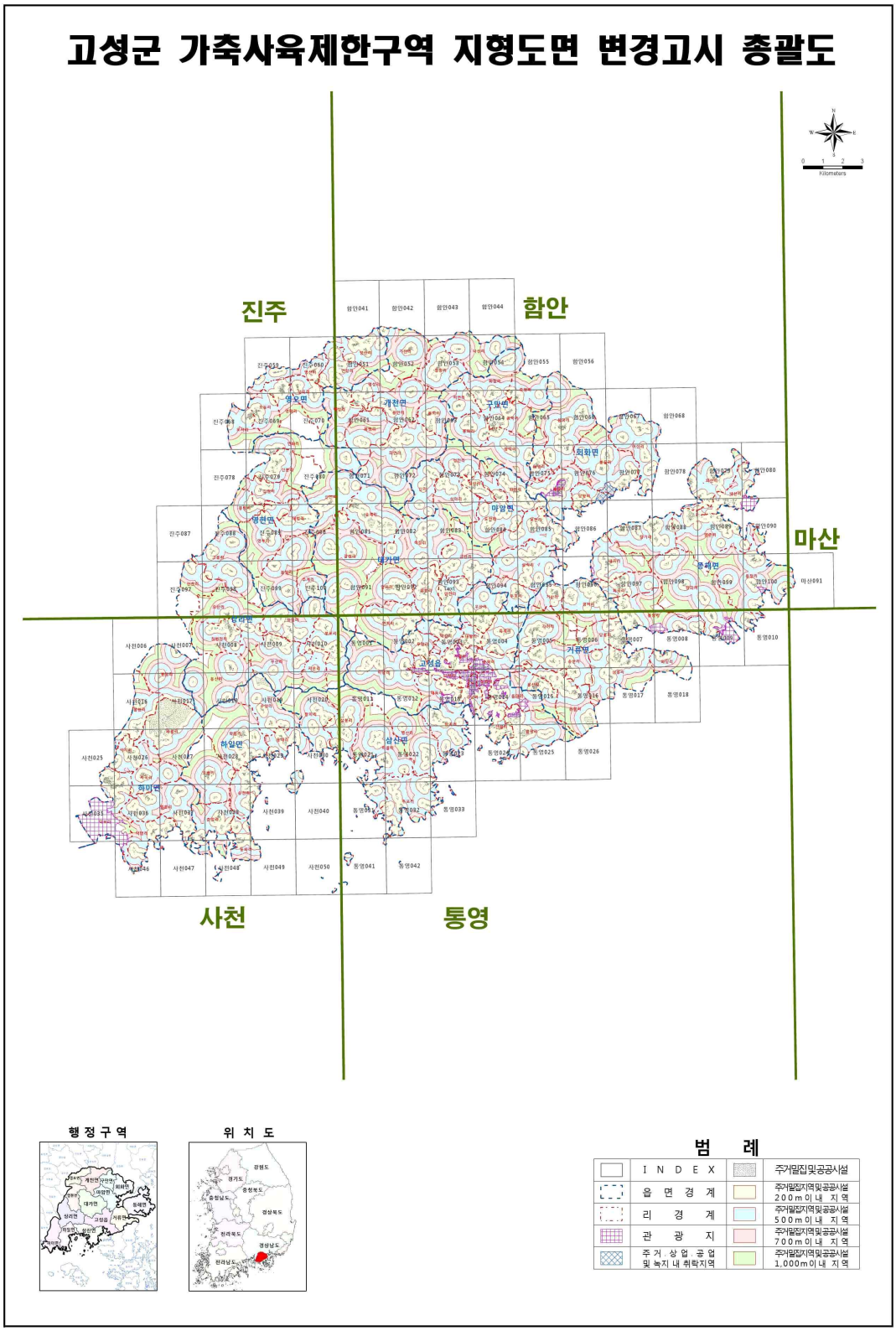
고성군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면 변경고시 총괄도
진주
함안
마산
사천
통영
영오면
개천면
구만면
회화면
영현면
마암면
대가면
동해면
당동면
거류면
고성읍
하일면
삼산면
하이면
행 정 구 역
위 치 도
범 례
I N D E X
읍 면 경 계
리 경 계
관 광 지
주 거 상 업 공 업 및 녹지 내 취락지역
주거밀집및공공시설
주거밀집지역및공공시설 200m이내 지역
주거밀집지역및공공시설 500m이내 지역
주거밀집지역및공공시설 700m이내 지역
주거밀집지역및공공시설 1,000m이내 지역

끝.

고성군 고시 제2021-236호

고성군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5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 8. 4.

고 성 군 수

○ 도로명주소 부여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효력발생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도로명 부여사유
(별지참조)				

○ 도로명주소 폐지

도로명주소	폐지고시일	폐지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 민원봉사과(☎055-670-2177)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도로명주소법」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7조의3 및 제9조 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

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도로명주소 부여

연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1	삼산면 미룡리 40-4	삼산면 두포로 798	2021.08.04.	건물번호부여신청	행정구역명(삼산면 두포리)을 이용하여 두포로로 명명	
2	삼산면 미룡리 483	삼산면 공룡로 2024-33	2021.08.04.	건물번호부여신청	공룡발자국 화석지가 분포되어 있는 지역적 특성을 반영	
3	하일면 동화리 190-1	하일면 소을비포길 81-11	2021.08.04.	건물번호부여신청	지역문화재인 고성소을비포성지 명칭을 활용하여 도로명 부여	
4	하이면 월흥리 455	하이면 월흥3길 89	2021.08.04.	건물번호부여신청	행정구역명(하이면 월흥리)을 이용하는 세번째 도로	

고성군 고시 제2021-243호

연안정비사업 실시계획 승인 고시

연안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연안정비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되었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1. 8. 10.

고 성 군 수

□ 연안정비사업 실시계획 승인 내용

사 업 명	사 업 시행자	사 업 시행장소	사업구분	사업규모	사업비 (백만원)	사업기간
용태지구 연안정비사업	경상남도 고성군수	경남 고성군 하일면 용태리	연안보전	호안(파라펫) L=288m	464	2020.01 ~ 2021.12